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70호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6. 18 ~ 6. 29 (10일간), 오전10시~오후4시 (토·일요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2018.6.18.(월)	가좌4동	(주)삼희축산주차장	2018.6.25(월)	가정1,2,3동	가정1동 주민센터
2018.6.19.(화)	가좌2,3동	가좌2동 주민센터	2018.6.26(화)	연희,심곡,공촌,시천 검암,경서,백석동	연희동 주민센터
2018.6.20.(수)	가좌1동	가좌1동 주민센터	2018.6.27.(수)	청라1동	청라1동 주민센터
2018.6.21.(목)	석남2,3동	석남2동 주민센터	2018.6.28.(목)	청라2,3동	청라2동 주민센터
2018.6.22.(금)	석남1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주민센터	2018.6.29.(금)	서구 전지역	서구청 (후문마실거리)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슈퍼마켓, 대형유통점,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쌀집, 청과상, 식당,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활성화팀 (☎032-560-4444)

